

제4차 디지털콘텐츠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공고

안양산업진흥원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관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『제4차 디지털콘텐츠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』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I 사업개요

- 공고기간 : 2025. 9. 12.(금) ~ 2025. 10. 3.(금)
- 지원규모 :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: 5,000천원 / 3개사
- 지원대상 : 관내 디지털콘텐츠 관련 중소·벤처기업
 - ▶ VR·AR, AI, SW, 메타버스, 빅데이터 등을 기존 제품 또는 신제품에 접목하여 어플리케이션, 플랫폼, 콘텐츠, 완제품을 제조·공급하고 있는 안양시 중소·벤처기업
 - ▶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 - ▶ 공고일 현재 안양시 사업자 등록 기업
- 지원제외 대상

1. 휴폐업 기업
2. 중견기업, 상장사
3. 참가하려는 해외전시회가 진흥원 지원사업(2025년 지원사업 한정)에서 중복 수혜된 경우 지원불가
예시 : 2025년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지원사업에서 “호주 펫 인더스트리 엑스포”에 참가하는 내용으로 선정된 경우 동일 전시회 참가 내용으로는 본 사업에 지원불가(타 전시회는 지원 가능)
4. 신청일 기준 국세, 지방세, 세외수입 체납 기업
5.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, 타사명의 참가

II 지원내용

- 해외전시회 참가 : 해외전시회 참여 1건 한정,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

지원항목	비율	세부내역
부스임차료	100%	· 기본부스 1개 : 3m×3m 기준
장치비	60%	· 부스내에 전시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 (임대료 포함) ※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 (전기료·통신료 등)
홍보비	60%	· 홍보물제작비 (홍보책자, 영상물 등)
통역비	60%	· 영어 제외
편도운송료	100%	· 1CBM (1CBM에 대한 지출증빙 제출)

- ▶ 사업기간 內 (2025. 1. 1. ~ 2025. 11. 30.) 해외에서 개최하는 전시회
※ 사업 선정 전 참여한 해외 전시회도 소급 지원
- ▶ 전시 참가 후, 실제 소요비용 대비 지원금을 사후 지급 : 소요비용 선납
※ 기업별 지원금액 한도는 지원대상 선정 순위 및 사업 예산 잔액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음

III 신청 및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9. 12(금) ~ 2025. 10. 3.(금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/ 담당자 e-mail 제출(ssy@aba.or.kr)
 - ▶ 메일 접수시 제목에 사업명 및 기업명 기입 必
 - ▶ 신청서(서식1 ~ 서식3)는 한글원본 제출, 그 외 증빙서류 PDF 제출
- 제출서류 : 별첨2 참고
- 담 당 자 : 신승용 과장 (031-8045-6712)

Ⅳ 선정 및 수행

○ 평가방법

- ▶ 서류평가 : 기업현황, 제품 경쟁력, 국내외시장 진출 계획의 타당성 등 평가

○ 선정기준 : 서류평가 전문평가위원 3인 산술평균 70점 이상, 고득점순 선정

- ▶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미선정 기업은 예비순위 선정
- ▶ 미달인 경우에도 70점 이상 획득 기업이 부재 시 미선정 및 재공고
- ▶ 진흥원 가감점 기준(별첨1)에 따른 가산점 부여 : 제출서류만 인정
- ▶ 동점시 지원 우선순위 적용 기준
 - 마지막 선정기업이 동점일 경우 서류심사 시 사업의 필요성 항목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 선정
- ▶ 최종 선정 기업 대상 개별 통지 : 미선정 기업에 별도 통보하지 않음

○ 사업수행

- ▶ 전시회 참가 후 기업별 결과보고서 제출(진흥원 별도 공지)
- ▶ 1월 ~ 9월에 참여한 기업은 별도 공지 후 일괄 보고서 제출
- ▶ 전시 참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: 2025. 11. 30.

V 주의사항

- 동일 전시회로 진흥원 또는 유관기관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수혜 예정 등 중복 지원일 경우 지원 취소
- 전시회 참가 시 타기업과 공동 부스를 사용하는 등 독립 부스가 아닌 경우 지원 취소
- <지원제외>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선정 후에도 확인 될 경우 지원 취소
- 모든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작성
- 간이영수증, 현금 거래 인정 불가하며 원화로만 증빙 가능(세금계산서, 이체영수증(원화표기 포함) 제출)

- 선정기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미 수행 또는 포기하는 경우,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기업지원 관련 지원사업 등에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
VI 문의처

- 안양산업진흥원 산업진흥부 신승용 과장 ☎ 031-8045-6712

별첨1 가감점 기준표

번호	항목	배점	관련근거	검증서류	발행처
1	안양시우수기업	5	·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, 제12조	인증서	안양시청
2	경기유망중소기업	5	·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	인증서	경기도청
3	여성기업	2	·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	인증서	한국여성경제인협회
4	신규고용창출	1	·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, 제5조	4대보험가입 (1인당 1점, 최대 4점)	2024년 고용만 인정
5	고용인력중 안양시 거주자수	1	· 안양산업진흥원 정관 제2조 (목적)	주민등록 등 (1인당 1점, 최대 4점)	2024년 고용만 인정
6	사회적기업	2	·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	인증서	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7	장애인기업	2	·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	인증서	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8	가족친화기업	2	·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(GGWP) 인증 ·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률 15조	인증서	경기도청
9	벤처기업	2	·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제2조	벤처기업 확인서	중소벤처기업부
10	이노비즈기업	2	·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	인증서	중소벤처기업부
11	공장등록기업	2	·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, 제5조	공장등록증	-
12	기업부설연구소	2	·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, 제5조	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13	청년기업	3	· 안양시 청년기업 조례 (만19세~39이하)	법인등기부 등본 등	-
14	품질인증	2	· 제품 품질 규격 인증(CE, CCC, KCC 등 1건 이상 동일 배점)	인증서 사본	
15	유망창업기업 (Blue100)	5	·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	인증서	안양산업진흥원
16	지식재산권	2	· 국내외 특허등록(1건 이상 동일 배점)	등록증 사본	
17	안양형 여성친화기업	2	·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추진계획(여성가족과-16198)	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협약서	안양시청
18	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	5	· 과기부 / 안양시 협약	사업자등록 증명원	국세청 홈텍스
19	입주부담금 연체	-5	· 진흥원 벤처기업지원실 운영내규 제22조 (입주자 지원 등) 3항	진흥원 확인	

※ 두 개 이상 가점 항목이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한 개만 인정

별첨2 제출서류

구 분	제출 서류	비 고 (유의사항)
필 수	· 재무제표 최근 3년치	· 2022년 ~ 2024년 재무제표 각 1부 · 2024년 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· 공고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만 인정
필 수	· 사업자등록증명원	· 공고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만 인정
필 수	· 신청서 / 사업계획서	· 첨부문서 참조
필 수	· 국세 완납 증명서 (공고일 기준)	· 공고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만 인정
필 수	· 지방세 완납 증명서 (공고일 기준)	· 공고일 기준 정부24 발급분만 인정
필 수	·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(공고일 기준)	·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분만 인정 ※ 엑셀 출력 금지
선 택	· 가감점 증빙자료	· 별첨1 가감점 기준표 참고
· 기술투자(확보) 분야		
선 택	· ISO 관련 인증서 사본	· 최근 3년 이내 취득분만 인정 · 종류 : 9001, 14001, 14004, 22000, 27001 등
선 택	· 해외규격인증 사본	· 최근 3년 이내 취득분만 인정
선 택	· 국내규격인증 사본	· 최근 3년 이내 취득분만 인정
선 택	· 특허증 및 실용신안권등록증 사본	· 출원포함 · 최근 3년 이내 취득분만 인정 · 디자인 및 상표등록은 제외